

[별표 8] <개정 2005.8.5>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기준(제36조제4항 및 제43조제4항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당해 산지의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 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산지의 표고가 3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 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0.5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적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숙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숙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입목의 분포 채취지역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3)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하여 허가한다)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석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채석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것
4. 완충구역의 설정 등	가. 완충구역의 설정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 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구역 에서는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채취등의 방법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거나 비탈면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 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단식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석재를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석하고자 하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요존국유림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 가.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채종림·보안림·시험림
 -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